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주)하나자산신탁

2. 제재조치일 : 2026. 5. 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1건,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개선사항 1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정비 필요

신탁계정대 자산건전성 분류 시 공사 진행률이 계획에 5% 초과 미달하는 경우 '요주의*'로 분류하고 있으나, 명확한 기준 없이 계획 공정률을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있는바

* 공사진행률이 계획에 50% 초과 미달하는 경우 '고정 이하' 분류

** 시공사 교체에 따라 계획 공정률 변경(경북 화천 공동주택 차입형토지신탁 등), 공사금액·공사기간 변동에 따라 계획 공정률 변경(경기 만정 공동주택 차입형토지신탁 등)

계획 공정률 변경 관련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 자의적인 건전성 분류를 방지할 필요가 있어 이를 강화하시기 바랍

* (예) 당초 계획 공정률을 유지하되, 공사도급계약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변경

나. 자율처리 필요사항

(1) 신탁계정대여금 자산건전성 오분류에 따른 대손준비금 과소 적립

금융투자업자는 매분기마다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한 건전성을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7>의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 및 <별표 8>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여야 하고,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금융투자업 규정」 제3-8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금액을 매 결산 시(분기별 가결산을 포함)마다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데도,

(주)하나자산신탁은 검사 대상기간(20.5.1. 이후) 중 신탁계정대여금의 자산건전성 분류시, “고정” 분류 신탁사업에 대한 총여신 중 ①회수예상가액 해당여신을 “고정”으로, ②손실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그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을 “회수의문”으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회수예상가액의 산정과 무관하게 전액을 “고정”으로 분류하여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의 자산건전성을 오분류함으로써, 동 기간 중 대손준비금을 최대 141억원 과소 적립한 사실이 있음

다. 개선사항

(1)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신고 관련 절차 미흡

(주)하나자산신탁은 「자본시장법」 제6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내규에 따라 분기별로 소속 임직원에게 대해 금융투자상품 매매계좌 개설 사실 및 거래내역을 징구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 연 1회 집합교육, 신입직원 연수시 교육

임직원 내규 위반시 조치에 미흡한 부분*이 있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교육내용에 부실한 점**이 있는 등,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신고 관련 내규를 정비하고 교육내용을 충실화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정식 징계가 아닌 준법감시인의 단순 주의 조치로 같음

** 공모주 관련 금융위원회 유권해석(21.6.1.) 내용 누락 등